제2653호
2019. 5. 1.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48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제2019-49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공 고

제2019-338호 : 2019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고 ····· 4
제2019-34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제2019-344호 :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4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필동2가 21-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5	2019.05.01.	필동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5.26.	행정구역 명칭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49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1-7	2019.05.01.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5-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1-1	2019.05.01.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38호

2019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공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목 적

○ 2019년도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사업시행기관

□ 지정 기관 수 : 1개

□ 서비스제공기관 자격

○ 서울특별시 중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1)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관리

- 아이돌보미 모집 : 양성보수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활동수당 지급, 보험가입 등
- 긴급돌보미(월급제 돌보미) 운영(선택사항)

(2)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보미에게 위임 가능
  (이용가정에 사전고지)

(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한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 여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돌보미 매니저 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

(4)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5) 기타 지자체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3.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민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지정기간 : **2019. 7. 1. ~ 2021. 6. 30.**(평가후 재지정 가능)

※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선정 방법

○ 서류 심사 : **2019. 5. 8.(수)까지 제출**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추가공고 없이 선정적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2019. 5월 중 개최

-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비공개 원칙)

5.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서비스 연계 계획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1부 (붙임 3)
·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공고기간 : 2019. 4. 29. ~ 2019. 5. 8.

○ **제출기간 : 2019. 5. 1. ~ 2019. 5. 8.**

○ 제출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근무시간내 가능, 우편접수불가

○ 제 출 처 : 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다문화팀) 방문접수

○ 통보방법 : 신청기관 개별 통지

○ 문의전화 : ☎ 02-3396-5433 (중구청 여성보육과)

6.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단, 보완 요청한 서류 제외)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 선정자로 결정함

○ 심의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여성보육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보육과(☎3396-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table>
<tr><td colspan="8">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td></tr>
<tr><td>사 업 기 관 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4" row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팩스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성명</td><td></td><td>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3">법인
관련</td><td colspan="2">법인명 :</td></tr>
<tr><td>등록일</td><td></td></tr>
<tr><td>전담관리자</td><td>(전화)</td><td>확보된
아이돌보미</td><td colspan="2">기 확보 명
확보계획 명</td><td>법인
성격</td><td>□ 공공
□ 비영리
□ 민간</td></tr>
<tr><td rowspan="2">지급계좌</td><td colspan="2">예 금 주
(서비스제공기관 대표)</td><td colspan="2">은 행 명</td><td colspan="3">계좌번호</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상기와 같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td></tr>
<tr><td colspan="8">※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1부
3. 가족·아동 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 1부
4.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5.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td></tr>
</table>

[붙임 2]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아이돌보미 등록 · 운영 등 계획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서비스제공기관 예산편성(안)의 형식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붙임 3]

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연 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 내용	비 고
계	건			

※ 가족·아동 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협약서 등 사본)

[참고자료]

서비스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아이돌보미 채용 및 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예산관리, 홍보,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할 것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 자격 및 운영 기준에 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40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이 다양화되어 이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일부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2호 별표 5)

-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규격 추가, 수수료 일부 상향
-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교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3396-5453, 팩스 : 3396-8754, email : (jaehunyu@junggu.seoul.kr,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1	가방류	가로 50㎝ 이상	3,000
		가로 50㎝ 미만	2,000
2	가스레인지 받침	모든 규격	3,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5,000
4	간판(칠판)	40㎝×100㎝ 이상	6,000
		40㎝×100㎝ 미만	3,000
5	거울	높이 50㎝ 이상	2,000
		높이 50㎝ 미만	1,000
6	건조대	전체	3,000
7	고무통	지름 100㎝ 이상	5,000
		지름 50㎝ 이상	4,000
		지름 50㎝ 미만	3,000
8	공기청정기	대형(사업장용)	5,000
9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10	금고	1m 이상	10,000
		1m 미만	7,000
11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	6,000
		130ℓ 미만	4,000
12	김칫독	옹기 제품 제외	5,000
13	깨진 유리	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2,000
		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3,000
14	나무 묶음	직경 40㎝	2,000
15	나무판자	개당(2m 이하)	2,000
16	난로	모든규격	3,000
17	냉장고	업소용	15,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500ℓ 이상	10,000
		300ℓ 이상	8,000
		300ℓ 미만	5,000
18	다리미 판	모든 규격	1,000
19	돗자리, 장판	3.3㎡당	1,000
20	런닝머신	모든 규격	20,000
21	마네킹	전체	3,000
22	목욕탕수건함	모든 규격	1,000
23	문갑	모든 규격	3,000
24	문짝	개당	2,000
25	물탱크(저수조)<FRP 또는 플라스틱>	15인승 이상	12,000
		15인승 미만	7,000
26	밥상	5인용 이상	4,000
		4인용	3,000
		3인 이하	2,000
27	배기 후드	모든 규격	2,000
28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양변기	10,000
29	병풍	2폭당	1,000
30	보일러	16,000㎉/h 이상	12,000
		16,000㎉/h 미만	8,000
31	보일러 기름 탱크	모든 규격	2,000
3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33	복사기	모든 규격	11,000
34	분말 소화기	가정용 10㎏ 미만	3,000
35	비키니(간이)옷장	모든 규격	3,000
36	서랍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37	선풍기	날개 50㎝ 이상, 영업용	3,000
38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39	세면대	모든 규격	4,000
40	세탁기	모든 규격	5,000
41	소파	4인용 이상	10,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3,000
42	스피커	개당	1,000
43	식기 건조기	모든 규격	2,000
44	식기 세척기	모든 규격	5,000
45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5인용 이하	4,000
		4인용 이하	3,000
46	신발장	높이 120㎝ 이상	4,000
		높이 120㎝ 미만	3,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47	쌀통	모든 규격	3,000
48	쓰레기통	사무실 · 옥외용	2,000
		가정용	1,000
49	씽크대	60㎝ 1개당	3,000
50	아기 침대	모든 규격	5,000
51	액자	대형(넓이 5㎡ 이상)	3,000
		소형(넓이 5㎡ 미만)	1,000
52	어항	1m 이상	6,000
		1m 미만	4,000
53	에어컨	25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54	오디오	대형	5,000
55	오디오 장식장	모든 규격	3,000
56	옥 매트, 자석 매트 등	모든 규격	4,000
57	온풍기	25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58	오락기	대형(업소용)	9,000
59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61	욕조	모든 규격	7,000
62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3	유아용 목마	모든 규격	1,000
64	유아용 자동차	모든 규격	2,000
65	의자	일반 의자(4인용 이상)	5,000
		일반 의자(3인용)	4,000
		일반 의자(2인용)	3,000
		일반 의자(1인용)	2,000
66	이불(요, 담요)	1채당	2,000
67	인형, 장난감 류	개당	1,000
68	자동판매기	대형(음료·커피·담배)	15,000
		소형	7,000
69	자전거	성인용	5,000
		아동용 이륜	4,000
		유아용 삼륜	3,000
7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71	재봉틀대	모든 규격	6,000
72	장롱	30cm당	3,000
73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74	전기장판(담요)	모든 규격	2,000
75	전자 오르간(디지털 피아노)	모든 규격	4,000
76	정수기	20ℓ 이상	5,000
77	진열대	모든 규격	3,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78	찬장	1칸	3,000
79	책꽂이(책장)	4단 이상	4,000
		3단 이하	3,000
		2단 이하	2,000
		90㎝×180㎝ 이상	10,000
		90㎝×180㎝ 미만	6,000
80	책상	양수	7,000
		편수	4,000
		컴퓨터 또는 서랍없는 책상	3,000
81	천막, 가림막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82	청소기	핸디형, 로봇 청소기 제외	4,000
83	침대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만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만	5,000
84	카펫	3.3㎡당	2,000
85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86	탁자	10인 이상	10,000
		3인 이상	5,000
		2인 이하	3,000
		응접 탁자	3,000
		차 탁자	2,000
87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42인치 미만	5,000
88	텔레비전 받침	모든 규격	3,000
89	파티션	1칸당	2,000
90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91	항아리	옹기 제품	2,000
92	헬스 기구	5㎏ 이상	6,000
		5㎏ 이하	4,000
93	헬스 자전거	모든 규격	5,000
94	화분	대형(직경 50㎝ 이상)	2,000
		소형(직경 50㎝ 미만)	1,000
95	파일 캐비닛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96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97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98	히터	모든 규격	2,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44호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편의점 과다 출점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며, 자치구 규칙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규정 변경(안 제3조)

○ 제1항 -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일반소매인)**

나. 담배 구내 소매인의 영업소 거리 예외 규정 일부 변경(안 제3조제3항)

○ 제3항 -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소매인 간의 거리를 **'25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구내(일반)소매인]**

다. 매장면적 측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제3호)

○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

라.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6항)

○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마. 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추가(안 제5조제2호)

○ 기존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 **PC방 추가**

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1) 제3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으로 변경

2) 제3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변경

사. 오탈자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아.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 시행**(안 부칙 제1조)

1) 일정 기간 경과기간을 두어 기존 소매인과 신규 신청자가 개정된 규칙에 대비토록 함

자. 종전 규정 **기간제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5년간 적용유예**

1) 폐업 신고 후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폐업 신고 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경우)

2)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도심산업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4층 (예관동), 문의전화: 02-3396-5594, FAX: 02-3396-8693, 메일: puhis8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정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을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으로, "50미터"를 "100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일시설물"을 "동일 시설

물"로, "구내소매인을"을 "구내 소매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매인간의 거리를 25미터"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간의 거리를 1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의 제목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을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 외부"를 "외부"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을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 PC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신청"을 "지정 신청"으로, "지정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자를"을 "적합한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고장소"를 "공고 장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 신고로 인해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경우. 다만 폐업 신고 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영업소가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지정받은 소매인의 100미터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 신청을 한 사람(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정 기준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 100미터 ----------.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 구조 · 상주인원 ·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동일 시설물 ---------- 구내 소매인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간의 거리를 100미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2. ---------- 제외한다.
<신 설>	3.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생 략)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외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
3.·4. 삭 제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1.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	1. ---------- 지정 신청---------- 지정 기준

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적합한 사람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고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3. 공고 장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 신고로 인해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경우. 다만 폐업 신고 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영업소가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이 지정받은 소매인의 100미터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 신청을 한 사람(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